

조세세에 관한 일부 중요 정책과 각 신법규문서의 업데이트

- 01 통지서 제68/2019/TT-BTC 호는 의령서119/2018/NĐ-CP의 전자영수증에 대한 안내를 한다.
- 02 통지서 제60/2019/TT-BTC 호의 수입상품에 대한 세관가치에 관련.
- 03 통지서 제62/2019/TT-BTC호는 수출입물건의 출처 확정에 대한 규정.
- 04 통지서 제06/2019/TT-NHNN호는 베트남에 외국의 직접투자활동에 대한 외화관리 관련.
- 05 제출기업에 대한기계설비 보수와 임대용설비에 대한 수입세및 VAT세금 관련.
- 06 교대용및 점심식사를 제공해준 기업의 보조금을 개인소득세부담에 계산해야 한다.



1. 통지서 제68/2019/TT-BTC 호는 의령서119/2018/NĐ-CP 의 전자영수증에 대한 안내를 한다.

2019/09/30일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지서 제68/2019/TT-BTC 호(통지 68)로 의령서119/2018/NĐ-CP 의 전자영수증에 대한 일부 조항들을 안내 한다.

이런 통지는 공식적으로2019/11/14일부터 발효한다. 그중엔 일부 주목된 점들이 다음 같다:



전자영수증의 내용과 적용 시간 관련:

- 2020/11/01일부터 각기업, 경제조직,기타조직및 영업법인, 개인들은 본 통지의 안내에 따른 전자영수증의 등록과 적용을 진행해야 한다;
- 전자영수증의 작성시점은 판매자가 수자로, 전자의 서명이 년, 월,일로 현시 되고 영수증의 작성 시점(3조 1항 e목)에 대한 안내과 적합된 포맷에 근거해서 정한다.
- 상품, 서비스의 이름: 영수증내에 상품, 서비스의 이름을 베트남어로 표시해야 한 다. 상품들이 여러 종류 있는 경우엔 상품의 이름중 매종류 까지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예: Samsung, Nokia 전화기...) (3조1항 d.1점).
- 영수증의 양식,기호의 근본적 변경과 특정적 상품의 특성, 기술치수의 세부 기록이 법규따라 한다.





전자영수증의 작성 시점:

- 전자영수증 작성시점은 항공 운송서비스 증빙들이 website system과 전자 무역 시스템에서 출서된 날부터 5일 불과 느리지 않다. (4조2항d점);
- 부동산 영업, 기초건축공사, 판매용 집건축, 양도하지만 사용권 아직 인수 못한 각 활동인 경우엔: 전자영수증 작성 날자는 수금 후 계약서의 결재 조건에 따른 일 이다. 사용권, 소유권을 인수된 경우엔: 전자영수증 작성은 의령 119호 (4조 2항c목)의 규정과 적합으로 정상적 진행한다;



전자영수증 작성과 잘못 영수의 처리:

- 150억 동(15 Bill.) 이하의 소유주 자금 보유 기업과 다음 포현중 하나 있어도 세무기관의 Code를 가진 전자영수증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즉: 공장, 상품창고, 판매장등 없고 의심된 은행거래가 있는 경우; 부모,친 형제, 부부, 크롯 소유의 연결관계 있는데 부터 50% 매출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1년중 영업주소의 2번 이상에 바꾼경우; (6조3항b점)
- 세무기관의 Code 있는 영수는 매번 발급에 2 종류가 있다.: 상품 판매 영수와 VAT 영수증. (6조4항)
- 전자영수증 작성 날자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의 잘못기록, 세금 code의 잘못 없으면 판매자가 구입측에게 영수증의 잘못이라 통보해주고 의령 119의 양식 04을 세무기관에 제출해준다. 나머지 잘못들이 확인문서를 작성하고 양식 04과 세무의 code 있는 대체 영수증(11조 2목)작성을 한다.





2. 통지서 제60/2019/TT-BTC 호의 수입상품에 대한 세관가치에 관하여.

2019/8/30일에, 재정부는 통지서 제60/2019/TT-BTC 호를 발급해서 통지 39/2015/ TT-BTC 의 수출입 물건에 대한 세관 가치를 일부조항 변경, 보충한다. 본 통지의 발효는2019/10/15일 부터이다.

이런 통지엔 3가짜 문제 크룹에 주요 있는 새로운 안내를 공급해 준다. 다음 포함: 수출입상품들의기치를 정한 방법과 원칙및 일반 규정과 가격 DATA 기초들을 포함 한다. 요런 업데이트 문서범위중에 우리는 주요 일부 변경만 주의로 하고십다. 다음:



수입물건의 세관 가치를 정하는 원칙과 방법 관련:

- 기계설비거래가치상에 Plus 혹 Non Plus를 하는 운영 과 콜트롤 Software의 각 상황에 대한 상세적 규정의 변경을 한다 (그중에 응용 Shopware 중간 방법의 가치에 합하는 필요없다);
- 세관신고자의 신고 절차와 세관기관의 검사 처리 순서의 변경;
- 수입물의 구,매거래상 가격에 영향 유,무있은지의 특별관계증명에 대한 각규정들의 보충 및 변경;
- 허가비 , 저작권비에 대한 각규정의 보충, 변경;
- 물건에 대한 세관가치를 정하기위한 가치 리스크 있는수출입물건의 List중 참조사용을 하지않는 경우의 상세적 보충 변경해서 가치의리스크 있는 수출입 물건의 List 사용 원칙과 동일한다 . 특수 수출입물건의 일부 경우에 대한 가치 확정규정의 보충 및 변경.



가치 데이터 베이스

- 세관가치에 대한 리스크 있는기업 List를 만들고 사용하는 규정의 보충, 그에 따라 검사업무는 가치의 리스크 있는 수출입 물건의 List 와 세관가치 리스크의 기업 List사용에 근거해서 진행한다.



3. 통지서 제62/2019/TT-BTC호는 수출입물건의 출처 확정에 대한 규정.

2019/9/05일에 재정부는 통지서 제62/2019/TT-BTC호를 발급으로 수출입상품들의 출처를 확정하는 규정의 재정장관의 통지는38/2018/TT-BTC의 일부조항들을 변경, 보충한다. 본 통지서는2019/10/21일부터 발효한다 그에 따라 상품 출처증명서를 거절하는 경우를 보충한다. 다음(1조3항):



수입절차를 할때 상품출처증명이 있지만 세관신고자가 참조 Number, 발급날을 기록하지않고; 상품출처증명이 아직없지만 세관 신고자가 규정의 세관수입 신고 서에 증빙 납입지연을 기록하지 않다.



세관신고자가 상품 출처 증면서의 납입지연을 기록신고하는 경우이지만 기한 over로 증빙보충, 제출을 하거나 세관기관이 규정처럼 출처 증명을 거절한다.

본 통지도 CPTPP전면 파트너협상 범위내 특별세율의 우대적용에 대한 수출입 물건의 출처 적용을 변경, 보충한다 .

4. 통지서 제06/2019/TT-NHNN호는 베트남에 외국의 직접투자활동에 대한 외화 관리 관련.

국가은행은 통지서 제 06/2019/TT-NHNN 호(“통지06”) 2019/06/16일에 발급으로 베트남에 외국의 직접투자활동에 대한 외화관리 안내 를 한다. 신통지는 2019 /09/06일부터 발효하고 국가은행의 통지 19/2014/TT-NHNN 의 2014/08/11일 발급을 대체해 준다.

통지 06의 주목된 새로운 점은 현행에 비해서 외국자본금투자기업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히 밝힌다. 본 통지도 BCC 계약참가 ,PPP제안을 집행하는 외국자본의 투자기업, 외국 투자자 의 직접투자용 계좌 오픈 업무관련의 규정을 더 확장해준다. .

첨부로, 통지06의 13조는 외국투자자가 자금 불입, 주식 구입, 기업에 자금 불입으로 외국투자자의 투자금 51%이상의 정관자본 소유를 하는 기업이면 본 통지의 규정 처럼 직접투자 계정을 open해야하는 규정을 한다.

그외에 통지 06도 현행법규처럼 투자신고 증인서, 현행법규대로 설립과 활동허가서에 투자자의 외화나 VND 으로 투자금불입의 진행을 가능한 일반 원칙과 자금조건보장 업무의 통보, 주식구입, 외국인의 자금 불입용 주식을 재 구입, 실권 국가기관과 계약된 PPP계약, 법규적합용 외국투자자의 자금 불입 진행을 증명해준 기타서류등 포함을 더 명백히 한다



5. 제철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보수와 임대용설비에대한 수입세및 VAT세 관련.

세관 총국은 문서1966/TCHQ-TXNK를2019 /04/05일에 발금으로 제철 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보수와 임대용설비에대한 수입세및 VAT세 관련을 안내한다.

그에 따라 제철기업은 국내기업에게 가공계약 합의된 주형(거푸집)을 공급해줘 가공을 진행할때 주형을 베트남에 임시 수입된때에 면세받다.

그러나 만약 제철기업은 국내기업에 주형을 빌여 줘 기계설비의 임대계약서에 따른 자기에게 부품 생산공급을 하는경우엔 베트남에 임시수입세 의 면세 대상에 속하지 않다.

그 외에 본 문서에도 제철기업에 공급해준 국내기업의 부품주형의 수리를 비세관구역외에(국내기업의 장소에 수리함) 진행하고 사용하면 0%의 세율로 적용된 대상이 아니다.



6. 교대용 및 점심식사를 제공해준 기업의 보조금을 개인소득세부담에 계산해야 한다.

2019/10/23일에 Hà Nội 세무서는 문서 제 80201/CT-TTHT 호 발급으로 교대용 및 점심식사의 용돈에 대한 법인소득세 정책을 안내한다. 이런 문시에 의하면 교대용, 점심식사를 제공해준 급식분을 주문구입의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해주면 그런 용돈을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부담에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교대용, 점심식사제공의 진행외에 기업은 현금으로 점심 식사용 보조금을 주면 이런 보조금을 규정대로 근로자의 개인소득 세부담으로 계산 해야 한다.



Contact

고객님께서 조세, 회계, 가격 이전, 외국인의 활동, 투자, 세관 및 노동자, 투자 정책, 생산 영업 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 의 전문가 들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 들어오셔서 검색해 주시면 된다: 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grantthornton.com.vn

© 2019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